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313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에이치케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관악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구합5559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3누53433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36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12.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9,000,000원, 가산세 49,512,700원, 지방교육세 18,361,270원, 농어촌특별세 9,925,630원 합계 226,79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2010. 11. 30. 자산보유자로부터 서울 관악구 A(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588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1. 9. 6.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11. 1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74억 5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1억 4천 9백만 원, 농어촌특별세 745만 원, 교육세 1,490만 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4. 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특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억 4천 9백만 원, 가산세 49,512,700원, 지방교육세 18,361,270원, 농어촌특별세 9,925,630원 합계 226,799,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취득세 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구 조특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는데, 개정 조특법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대상을 축소하였다. 한편 개정 조특법 부칙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세제상의 혜택을 신뢰하여 법 개정 전인 2010. 3. 30. 자산보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부채권을 양수하였고, 투자자도 이에 기초하여 원고 회사에 투자한 점, 자산유동화는 미리 수립된 유동화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일련의 유동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대법원은 개정 조특법 부칙 제52조 규정과 유사한 경과규정을 특별규정으로 해석하여 관련 사안에서 개정전 법령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52조에 의하여 구 조특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개정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개정 조특법 부칙 제2조 제6항은 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 중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5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개정 조특법 규정이 취득세 감면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에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 구 조특법 규정은 2012. 12. 31.까지의 한정된 기간 동안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당시의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신청인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등으로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비록 개정 조특법이 시행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나,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설령 장래의 담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뢰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개정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환송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다가 개정 조특법 규정이 시행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정 조특법에 의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개정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자산보유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접 승계 취득하는 경우'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관리 · 운용 · 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관리 · 운용 · 처분하는 과정'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안전행정부의 유동화전문회사 취득세 감면 관련 의견서(을 제3호증) 및 법제처 사실조회(갑 제14호증) 등에 의하면, 구 조특법이 정하였던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신법 규정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 중 50%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개정 조특법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내지 경매 신청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구 조특법 규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개정 조특법 규정에서 제외되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위와 같이 개정 조특법 규정에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개정 조특법 규정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과 관계없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④ 개정 조특법 규정의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고, 만약 위 문구를 '자산보유자 등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되는 점, ⑤ 설령 개정 조특법 규정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등의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개정 조특법 규정을 문언 자체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개정 조특법 규정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같은 경매절차에서의 취득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원고를 설립한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개정 조특법이 시행된 후인 2011. 5. 2.경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개정 조특법 시행 후에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2011. 5. 4.경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원고는 2011. 6. 21.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경락으로 취득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확인서를 받기도 한 외에 여러 유동화전문회사가 개정 조특법 시행 후에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유동화전문회사들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점에 관하여 신뢰를 갖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과세관청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관한 회신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들어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질의회신(갑 제6호증)의 당사자도 아니었던 점, ② 원고 등 유동화전문회사가 신법 시행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다른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를 갖게 할 만한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보면,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으로 인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개정 조특법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어 원고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내용을 미리 파악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던 점, 서울특별시에서는 2012. 3. 1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과 같은 경매절차에서의 취득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전부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개정 조특법의 시행에 앞서 입법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 ·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바. 납세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는 본세 및 가산세의 각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본세 및 가산세의 각 액수 및 그 산출근거, 가산세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흠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상고심에서 피고가 2015. 10. 21. 제출한 지방세 과세예고에 첨부된 '취득세 추징 산출내역'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에 관하여는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만이 구분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각 본세에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액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손삼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판사 김용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관계 법령

● 구「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 구「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제10406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